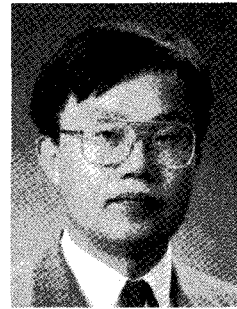


경쟁촉진을 위한 가격표시제도의 개선방향



김범조

공정위 경쟁촉진과장

현행 가격표시제도는 제조업자가 표시하는 공산품에 대한 공장도가격(수입품은 수입가격)표시제도, 일반상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 및 재판매가격유지제도와 소매업자가 표시하는 소매가격표시제도로 대별된다.

공장도가격(수입가격) 표시제도

공장도가격표시제도는 물가안정에관한법을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가격표시제실시요령(통산부고시)에 의거 통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을 생산(수입)하는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제품에 공장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79. 4월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대상품목이 축소, '96. 8월 이후 핸드백, 에어컨 등 53개 품목(수입품은 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도

권장소비자가격이란 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공장도가격에 적정유통마진

을 감안하여 정한 소매가격으로서 희망소매가격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제조업자의 권장소비자가격표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도 유통업자의 폭리를 방지하는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그동안 이의 표시를 권장해 왔다. 이러한 권장소비자가격은 실거래가격을 현저히 초과(20%)하지 않는 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부당표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다단계판매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방문판매에관한법을 제31조에 의해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

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 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독립사업자의 자유로운 판매가격책정을 구속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로써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과 공정위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되며 이에 따라 현재 도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인 정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한편 약국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의약품 가격 질서의 문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해 의약품 개개의 포장 및 용기에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는 제약회사가 표시하는 의약품표준소매가격도 일종의 재판매가격유지제도와 할 수 있으며 현재 약국 등의 소매업자는 표준소매가격대비 30%이상 할인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소매가격 표시제도

소매가격표시제도는 물가안정예관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의거 통산부장관이 지정한 백화점 등 38개 업종에 해당하는 33㎡ 이상의 점포, 시장, 대형점, 쇼핑센터 내의 모든 소매점포, 기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에 소매가격을 표시토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7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하여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과정에서

유통업자의 폭리를 방지하는 것이 가격표시제의 취지였으나 최근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산과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인한 소매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의 심화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가격표시제도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저해되는 등 폐해가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권장소비자가격의 경우 제조업자가 소매업자의 가격할인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가격을 높게 표시하고 소매업자는 이렇게 높게 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상시 할인판매하는 비정상적인 유통관행을 조장시켜 왔다. '97. 5월 화장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표시가 금지되기 전까지 화장품 소매업자의 연중 할인판매관행과 소매업자간 할인판매를 경쟁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권장소비자가격을 경쟁적으로 인상표시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지난 1월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서도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한 55개 품목 중 32개 품목(84개 제품)은 권장소비자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20% 이상 과다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되고 있는 권장소비자가격은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오히려 왜곡된 가격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저해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권장소비자가격대로 판매하게 하거나 제조업자간 암묵적인 담합수단으로 쓰이는 등 문제점도 야기시키고 있다.

한편 의약품표준소매가격의 경우 약국간의 가격경쟁을 근본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막

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도서정가제의 경우 예술성·창작성을 보호하고 판매전망이 불확실한 문화상품의 시장진입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한 잡지나 참고서 등에 대해서도 재판매가격(정가)이 허용되고 출판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고서적의 할인판매가 불가능하여 재고상품의 원활한 유통이 저해되고 있어 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가격표시제로 인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소매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종판매업자가 자기의 판매가격을 자유롭게 표시하는 Open Price제도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관행이 금지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어 Open Price제가 일반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정보공표법에 의해 권장소비자가격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에 판매업자가 실제로 받는 소매가격만 표시하고 있고 권장소비자가격은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법령에 의해 소매업자의 판매가격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한 상품이외의 상품에 대해서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주장하는 것은 경쟁제한금지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둘째,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을 축소하거나 이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공장도가격표시 대상상품 중 제조업자간 가격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 공장도가격표시를 통한 소비자보호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품목은 우선적으로 제외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공장도가격표시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령상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되고 있는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통하여 재판매가격유지허용대상이 한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학습참고서, 잡지 등 예술성·창작성과 관련성이 적은 일부서적은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서적의 할인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유통의 효율성 제고와 서적의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으로는 의약품가격이 자율결정되고 약국간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의약품소매가격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1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금년 3월중 의약품의 거래단계별 하한을 폐지하고 2000년부터 표준소매가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가격표시제도 개요 ◆

표시주체	제도명 (시행시기)	표시대상 품 목	근거법령	관련규정	비 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공장도가격 표시('79) 수입가격 표시('90)	통산부장관이 지정하는 53개 품목 (수입품 40개 품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통산부고시)	의무사항
	권장소비자 가격표시	일반상품	근거없음	-	자율사항
		다단계판매업자 판매상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의무사항
	재판매가격 유지제도	도서	공정거래법	-	자율사항
의약품		약사법	의약품가격표시 및 관리기준 (복지부 고시)	의무사항	
소매업자	소매가격 표시('73)	통산부장관이 지정하는 38개 업종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소매업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통산부고시)	의무사항

IMF 이것이 궁금하다
.....
BIS 비율

은행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것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은행들이 지키도록 규정한 자기자본 비율을 말한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 외화 자산 등이 포함된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된다.

은행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8%의 자기자본 비율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외 차입 자체가 어렵거나 치밀하더라도 높은 조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 은행들이 지난 12월 말 BIS 비율 8%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온갖 대출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을 동결하거나 회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그 동안 국내 은행에도 BIS 비율이 적용됐다. 다만 은행들의 실력을 고려해 대손충당금은 94%, 유가증권 평균손은 50%만 쌓도록 하는 '한국형 BIS 비율'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국내 은행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대로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 평균손 충당금을 100% 적립하면 시중 은행 6개, 지방 은행 7개만이 BIS 비율 8%를 넘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월 10일 BIS 비율 산출 시점을 3월 말 기준에서 작년 말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고 8%를 채우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충족 방안을 제출하고 6개월~2년 사이에 충족시키라고 지시했다.